

헌법재판소공보

제334호

2024년 8월 20일(화요일)

헌법재판소사무처 (1)

— 목 차 —

규 칙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71호)	1200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72호)	1202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규칙 제473호)	1202

인 사	1205
-----------	------

공지사항

주요업무일지	1206
심판사건통계표	1208
등록도서현황	1210
주요신착도서	1210
- 2024년도 7월 구입도서	1210
- 2024년도 7월 교환도서	1212
헌법재판소장 동정	1213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1214
------------------	------

판 려	1215
-----------	------

규 칙

○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71호)
2024. 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③ 보안관리대원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 별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총괄책임관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 또는 공관에 출입하려는 인원 및 차량의 방문 목적 확인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출입증의 교부 및 청사 내에서의 출입증 패용여부 확인
3. 사무처장이 정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 또는 청사출입차량의 검색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임시보관,

청사 외부로의 반출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협조요청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위험물 등을 소지한 경우
- 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주었거나 주려는 경우
- 다.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하려는 경우
- 라. 청사의 안녕과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경우
- 마. 기타 보안대원의 협조요청이나 조치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여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청사 또는 공관 부지 안에서의 주차통제

7. 청사 또는 공관 부지 안에서의 순찰 또는 CCTV 관제 등을 통한 위해요소 점검

8.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 관리자)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괄책임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그 사항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사출입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 인격모욕적 언행 또는 성차별·성희롱성 언행 등 보안관리대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총괄책임관 또는 현장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 근무 중의 음주, 수면 등 성실한 근무를 저



해하는 행위

- 4. 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 5.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③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하고, 본문 중 “보안책임”을 “비밀관리책임”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보안유지를 위하여”를 “비밀관리유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비밀관리담당관(이하 “비밀관리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

획담당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보안대책”을 “비밀관리대책”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안사고 조사)”를 “(비밀사고 조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보안사고”를 “비밀사고”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보안감사)”를 “(정기감사)”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안관리상태”를 “비밀관리상태”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

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보안조치”를 “비밀보호조치”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유지책”을 “비밀관리유지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보안담당관”을 “비밀관리담당관”으로 하고, “보안교육”을 “비밀관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안담당관 귀하”를 “비밀관리담당관 귀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6. 보안대책”을 “6. 관리대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2. 본인은 비밀 관련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비인가 사유별 현황 표 중 “보안관리 취약”을 “비밀관리 취약”으로 하고,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표 중 “보안사고·규정위반”을 “비밀사고·규정위반”으로 한다.

◇ 제정이유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함(제2조)
- 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이 헌법

재판소보안관리대 총괄 책임관이 되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총괄책임관을 지휘하며 현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제3조)

다.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 헌법재판소 청사 및 공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의무를 정하고, 청사 또는 공관 출입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조치(신분확인, 보안검색, 퇴거조치 등)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72호) 2024. 7. 16.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법의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조제3항)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73호) 2024. 7. 26.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제43조, 제44조, 제45조”로 한다.



제21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9조의3제5항 중 “마다”를 “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4조 중 “있고, 임기제공무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를 “있다.”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거나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3. 임기제공무원을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45조의4제1항 중 “제43조제1항에”를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45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5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으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년”을 “6년”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93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를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를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승인하되”를 “사용할 수 있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를 “임신 중인 공무원은”으로,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를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21조제4호”를 “제21조제3호”로 한다.

별표 14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표 15 제4호가목 전단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7조 제5항 전단 및 별표 15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유연하고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속승진, 자기개발휴직, 휴가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근속승진 범위 확대 및 심사 횟수 제한 폐지 (제29조의3제5항 및 제6항)
 매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6급 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
- 나.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근거 규정 신설 (제44조의2 신설)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등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
- 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 도입(제45조의4)
 공무원이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사무처장이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 완화(제45조5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

마.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 확대(제92조제1항)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의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부여)

바.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폐지(제93조의3) 저축한 연가는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제97조제5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제97조제15항) 자녀 1명당 1일씩을 추가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확대함

인 사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 2024. 7. 1.

前 기획조정실장 김 용 호
면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관리국장 정 영 주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기획조정실장 하 정 수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성희룡·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2024. 7. 5.

前 행정관리국장 이 형 주
재정기획과장 박 재 은
면 성희룡·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행정관리국장 정 영 주
AACC지원과장 윤 정 경
명 성희룡·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2024. 7. 5. ~ 2025. 7. 4.)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 2024. 7. 8.

기획조정실장 하 정 수
면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심판지원실장 이 형 주
명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2024. 7. 8. ~ 2026. 7. 7.)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 2024. 7. 8.

前 기획조정실장 김 용 호
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조정실장 하 정 수
명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2024. 7. 8. ~ 2026. 7. 7.)

○ 신규채용

- 2024. 7. 15.

송 영 진
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
(2024. 7. 15. ~ 2026. 7. 14.)

신 원 주
임 조사관(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명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2024. 7. 15. ~ 2026. 7. 14.)

- 2024. 8. 1.

김 동 옥
김 유 문
이 상 혁
이 영 호
임 헌법연구원

(2024. 8. 1. ~ 2034. 7. 31.)

○ 승 진

- 2024. 8. 1.

헌법연구원보 문 숙 현
임 헌법연구원
(2024. 8. 1. ~ 2034. 7. 31.)

○ 전 보

- 2024. 7. 31.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행정주사 허 제 연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명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지원근무

○ 파 견

- 2024. 7. 11.
 헌법연구관 박 혜 연
 명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로스쿨 한국법센터 국외장기연수 파견근무
 (2024. 7. 11. ~ 2025. 7. 10.)
 선임헌법연구관 김 인 숙
 명 영국 퀸메리 대학 로스쿨 커머셜로 연구센터
 국외전문화연수 파견근무
 (2024. 7. 12. ~ 2025. 1. 11.)

- 2024. 7. 18.
 국회사무처
 이사관 곽 현 준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입법협력관 근무기간
 연장
 (2024. 7. 18. ~ 2024. 8. 17.)

- 2024. 7. 22.
 국회사무처
 이사관 곽 현 준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입법협력관
 국회사무처
 이사관 박 혜 진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입법협력관
 (2024. 7. 22. ~ 2025. 7. 21.)

○ 휴 직

- 2024. 8. 1.
 행정관리국 총무과(청사보안 및 비상대비 등)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보안서기 권 민 수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명 육아휴직
 (2024. 8. 1. ~ 2024. 11. 30.)

○ 복 직

- 2024. 7. 30.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AACCC지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다급 유 정 민
 명 육아휴직 복직
 - 2024. 7. 31.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주사보 박 신 영
 명 육아휴직 복직
 명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 교육훈련

- 2024. 7. 22.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기계주사 김 영 철
 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건설안전점검' 교육
 입교
 (2024. 7. 22. ~ 2024. 7. 26.)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2024년 7월>

- 7. 1.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제3기 / 제4기」 실시
 - 교육기간: 2024. 7. 1.(월) ~ 7. 12.(금) (3기)
 2024. 7. 15.(월) ~ 7. 26.(금) (4기)
 - 교육대상: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101명
 - 교육내용: 헌법재판실무 교육, 청구서 및 연구보고서 작성, 토론 등
- 7. 8.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육실무연수」 실시
 - 연수기간: '24. 7. ~ '24. 8.
 - 연수대상: 박현성 등 3명
 - 연수내용: 헌법 재판 관련 연구 조사, 지도연구관 부여 연구과제 수행



성명	소속	기간	지도연구원
박현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7.8.~7.12. 7.22.~8.9.	김태호 책임연구원
김수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7.26.~8.26.	박주영 책임연구원
이소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7.22.~8.23.	신호은 책임연구원

「해외 로스쿨생 교육실무연수」 실시

- 연수기간: '24. 6. ~ '24. 8.
- 연수대상: 강정훈 등 4명
- 연수내용: 헌법재판 관련 외국사례 조사 등 지도연구원 부여 연구과제 수행

성명	소속	기간	지도연구원
강정훈	University College London	6.17.~8.30.	김태호 책임연구원
백소영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7.8.~8.16.	임기영 책임연구원
Elisa Wax	Sorbonne Law School	7.22.~8.30.	김지영 책임연구원
서재인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8.5.~8.30.	박주영 책임연구원

중·고등학교 헌법교육(원격) 실시

- 대구 청구고등학교 [7. 8.(월)]
 - 교육인원: 11명
- 대전 서일고등학교 [7. 9.(화)]
 - 교육인원: 19명
- 부산 경남여자고등학교 [7. 15.(월)]
 - 교육인원: 40명

7. 9. 변론

- 사건: 2022헌라1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7. 11.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16.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원외출강 실시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7. 16.(화)]
 - 교육대상: 8급 신규임용자 29명
 - 교육내용: 법제를 위한 헌법

7. 18. 선고결과: '2022헌가6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 제청' 등 총 47건

- 위헌1, 헌법불합치 1, 합헌 19, 기각 15, 각하 6, 인용 5

2024년도 상반기 연구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7. 18.(목) 10:00
- 장소: 헌법재판연구원 5층 대회의실
- 참석: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각 팀장, 외부위원 4인
- 안건: 상반기 연구보고서 11건 평가

7. 19.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헌법연구원 임용안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7. 26.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4호(통권 제67호) 발간

- 발간일: 7. 26.(금)
- 내 용: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7호 뉴스레터(2024. 6. 발송)' 내용을 인쇄물로 발간하여 재판소, 국회 등 유관기관과 연구·조사 성과물 공유

7. 1. ~ 7. 31.

- 홈페이지 운영현황
- 접속건수: 569,552건
(누적통계: 7,352,760건)

○ 심판사건통계표

심판사건총괄표																	
2024. 7. 31.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전달(년)미제	이달(년)접수	합계	결정									취하			
					계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7월계	합계	1,502	1,274	228	231	228<2>	1<1>	1<1>			5	19	15	187(181)	3	1,271	
	위헌법률	40	38	2	1	1<1>	1<1>									39	
	탄핵	2	2													2	
	정당해산																
	권한쟁의	10	9	1												10	
	헌법소원	계	1,450	1,225	225	230	227<1>	1<1>			5	19	15	187(181)	3	1,220	
		\$68①	902	744	158	145	143<1>	1<1>			5		15	122(118)	2	757	
	\$68②	548	481	67	85	84					19		65(63)	1	463		
금년누계	합계	3,032	1,604	1,428	1,761	1,731<17>	47<11>	13<6>		29	188	293	1,159(1,092)	2	30	1,271	
	위헌법률	65	53	12	26	26<11>	14<6>	5<5>			5		2			39	
	탄핵	3	3		1	1						1				2	
	정당해산																
	권한쟁의	12	9	3	2	2							1	1		10	
	헌법소원	계	2,952	1,539	1,413	1,732	1,702<6>	33<5>	8<1>		29	183	292	1,156(1,092)	1	30	1,220
		\$68①	1,954	956	998	1,197	1,175<4>	5<3>	2<1>		29	7	292	840(797)		22	757
	\$68②	998	583	415	535	527<2>	28<2>	6			176		316(295)	1	8	463	

※ 주

1. 결정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심판사건누계표

1988. 9. 1. - 2024. 7. 31. 현재

구분	접수	처 리											미 제		
		합 계	결 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합 계	51,290	50,019	48,804 <855>	781 <528>	323 <245>	70 <53>	28 <29>	949	3,490	8,957	34,194 (31,767)	12	1,215	1,271	
위헌법률	1,126	1,087	957 <410>	356 <302>	104 <81>	18 <13>	7 <14>		391		81		130	39	
탄핵	7	5	5					1		3	1			2	
정당해산	2	2	2					1			1				
권한쟁의	135	125	106					22		31	52	1	19	10	
헌법소원	계	50,020	48,800	47,734 <445>	425 <226>	219 <164>	52 <40>	21 <15>	925	3,099	8,923	34,059 (31,767)	11	1,066	1,220
	§68①	39,530	38,773	37,871 <212>	132 <120>	94 <76>	20 <16>		925	18	8,923	27,751 (25,930)	8	902	757
	§68②	10,490	10,027	9,863 <233>	293 <106>	125 <88>	32 <24>	21 <15>		3,081		6,308 (5,837)	3	164	463

※ 주

1.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 등록도서 현황

(2024. 7. 31. 현재, 단위: 권)

구 분		합 계	국 내	국 외		
				소 계	동 양	서 양
2023년 말 누계		186,433	86,871	99,562	37,840	61,722
2024년	전월 말 누계	2,870	1,262	1,608	346	1,262
	7월	500	26	474	153	321
	소 계	3,370	1,288	2,082	499	1,583
총 계		189,803	88,159	101,644	38,339	63,305

○ 주요신착도서

- 2024년도 7월 구입도서

【국 내】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노동법강의	김 형 배 , 박 지 순	신 조 사	2024
• 노동법	임 중 룰 , 김 홍 영	박 영 사	2024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법 무 법 인 (유 한) 태 평 양 (공 동 편 집) , 재 단 법 인 동 천 (공 동 편 집)	경 인 문 화 사	2024
• 세법강의 22판	이 창 희	박 영 사	2024

【독 일】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DHG I Dienstnehmerhaftpflichtgesetz : 1. Auflage Kurzkommentar	Thomas Pfalz	Linde Verlag Ges.m.b.H	2023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I : Grundlagen und Lehre von der Straftat	Helmut Fuchs; Ingeborg Zerbes	Verlag Österreich	2024
• Unterhaltsrecht für die Soziale Arbeit 1. Auflage	Gabriele Janlewing	Kohlhammer	2023

【영 미】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A Critical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 Texts, Cases and Materials	Patrick R. Go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Benched Justice : How Judges Decide Asylum Claims and Asylum Rights of Unaccompanied Minors	Claire Braaten; Daniel Braaten	Lexington Books	2023
• Global Governance,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 Combating the Tragic Flaw	Errol P. Mendes	Routledge	2024
• Human Dignity, Judicial Reasoning, and the Law : Comparative Perspectives on a Key Constitutional Concept	Brett G. Scharffs (Editor); Andrea Pin(Editor); Dmytro Vovk (Editor)	Routledge	2024
• Markets, Constitutions, and Inequality	Anna Chadwick (Editor); Eleonora Lozano-Rodríguez (Editor); Andrés Palacios-Lleras (Editor); Javier Solana(Editor)	Routledge	2024
• Research Methods in Human Rights : A Handbook: Second Edition	Bård A. Andreassen (Editor); Claire Methven O'Brien(Editor); Hans-Otto Sano (Editor)	Edward Elgar Publishing	2024

【일 본】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브레스트텡憲法 第4版	駒村 圭吾 (編集)	弘 文 堂	2024
• 로봇법 : AI와 인간의 공생에むけて	平 野 晋	弘 文 堂	2024
• 個人データ保護のグローバル・マップ : 憲法と立法過程・深層からみるプライバシーのゆくえ	山本龍彦 (編集); 小川有希子 (編集); 尾崎愛美 (編集); 徳島大介 (編集); 山本健人 (編集)	弘 文 堂	2024
• 同性婚のこれから : 「婚姻の自由・平等」のために法と政治ができること	ジェンダー法 政策研究所 (編集)	花 伝 社	2024
• 災害行政法 <第2版>	村 中 洋 介	信 山 社	2024
• 學生生活の法學入門 第2版	山下純司; 深町晋也; 高橋 信行	弘 文 堂	2024
• 環境リスクと行政の不作爲	清 水 晶 紀	信 山 社	2024

【프랑스】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Faits et preuves dans le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Laurence Gay (Rédacteur adjoint); CATERINA SEVERINO (Rédacteur adjoint)	Bruylant	2024
• Les sociétés face aux défis climatiques	Sandrine Maljean-Dubois (Auteur); Stéphanie Vermeersch (Auteur); Agnès Deboulet (Auteur)	CNRS éditions	2024

- 2024년도 7월 교환도서

- 교환처: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교
- 교환일자: 2024. 7. 9.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法研論集 vol.189	早稻田大學法學大學院 法學研究科	早稻田大學法學大學院 法學研究科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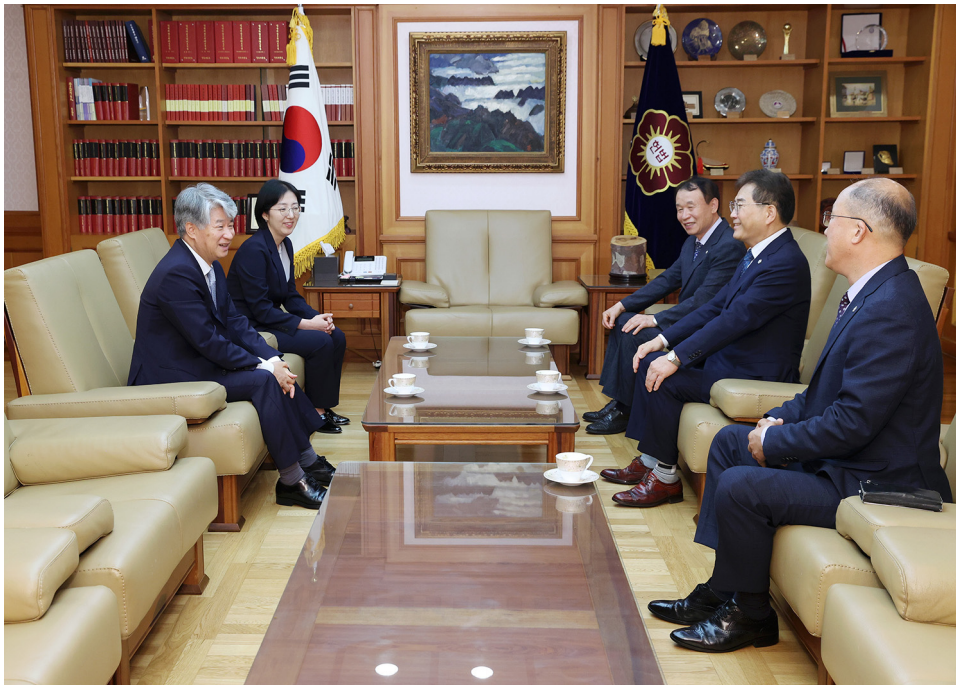
- 교환처: 일본 오사카(大阪)대학교
- 교환일자: 2024. 7. 9.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 阪大法學 vol.74 no.1	大阪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	大阪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	2024



○ 헌법재판소장 동정

연 월 일	내 용
2024. 7. 17.(수)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국회의사당 중앙홀)
2024. 7. 24.(수)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접견(헌법재판소장 접견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접견(2024. 7. 24.)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헌법소원 청구 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자
- 기타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문의: 심판민원과 02-708-3460